

충청북도 미술품 보관·관리 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곽영학

충청북도 미술품 보관·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출자 : 이옥규 의원 등 8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0년 5월 29일
- 회부일자 : 2020년 6월 1일

3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에서 소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미술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적용범위 (안 제2조)
 -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고 한다)와 소속기관, 충청북도의회가 구매(자체제작 포함), 기증,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한국화(병풍, 족자 포함), 서양화, 판화, 서예, 조각, 도자기, 사진, 공예품 등의 미술품
- 미술품의 취득, 보존 및 관리 (안 제3조~4조)
- 재물조사 (안 제6조)

- 충청북도 미술품관리 자문위원회 (안 제7조)
- 사무의 위임, 세부기준 (안 제10조~11조)

5. 검토의견

-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에서 소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을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.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2조에서는 미술품에 대한 적용범위를,
 - 안 제3조에서는 취득에 관한 사항을,
 - 안 제4조에서는 효율적인 보존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,
 - 안 제6조에서는 미술품 보유현황 점검을,
 - 안 제7조에서는 미술품관리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,
 - 안 제9조에서는 손상된 미술품에 대한 유지·회복을 위한 조치 사항을,
 - 안 제10조~11조에서는 사무의 위임과 세부기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.
- 이 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에서 소유하고 있는 미술품에 대하여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 관리는 물론, 지역의 문화예술 유산 보존과 지역예술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붙임 : 충청북도 미술품 보관·관리 조례안. 끝.